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4. 1.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인권국

1. 개정이유

2023. 10. 12.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자격 등의 요건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원 범위 변경(안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대상범위를 규정한 규칙 제17조의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

나. 위임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제12조의 2)

진술조력인의 의무와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일관성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명칭을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반납”에서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으로 개정하고, 기존 제11조의 조문을 제11조 제1항으로 이동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② 법 제35조의3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수등의 지급)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4항”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1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반납)</u>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u>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u>제12조의2(보수등의 지급)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 및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u>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